

의안 번호	1498	<b>【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】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9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1. 29.(목)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주민자치국장 조수관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의회의 심의·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○ 조성 규모 (단위 : 천원)

2018년도 말 조성액 ㉠	2019년도 조성계획			2019년도 말 조성액 ㉡=㉠+㉢	비고
	수입 ㉣	지출 ㉤	증감 ㉢=㉣-㉤		
29,080	116,515	140,000	△23,485	5,595	

○ 기금운용계획 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
계	전입금	예치금 회수	이자 수입	계	비용자성 사업비	예치금
145,595	116,149	29,080	366	145,595	140,000	5,595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### 3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.>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